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354 호   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6년 3월 15일<br>(제 346 회) |

**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안 자 | 의회운영위원장      |
| 제안연월일 | 2016년 3월 15일 |

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5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6년 3월 15일

제출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 절차와 현재 운영 절차가 맞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
- 일부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“도지사” 라고 표기 하고 있어 이를 “교육감” 도 병행 표기하여 혼선을 막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에 회부한 후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, 소관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(안68조 ①항)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“도지사” 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를 “교육감” 도 병행 표기

## 3. 개정규칙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354호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도지사”를 “도지사나 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8호 중 “도지사”를 “도지사나 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도지사는”을 “도지사나 교육감은”으로 한다.

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,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”을 “도지사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 제목 “(도지사등의 출석요구)”를 “(도지사·교육감 등의 출석요구)”로 하고, 제73조제1항 중 “도지사나”를 “도지사·교육감이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지사나”를 “도지사·교육감이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지사나”를 “도지사·교

육감이나”로, “도지사가”를 “도지사·교육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도지사”를 “도지사·교육감”로 한다.

제75조의 제목“(도지사 등의 발언)”을“(도지사·교육감 등의 발언)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(생략)</p> <p>제16조(휴회) ① (생략)</p> <p>② 휴회 중이라도 <u>도지사</u>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.</p> <p>제21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.</p> <p>1.-7. (생략)</p> <p>8. <u>도지사</u>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</p> <p>9.-13. (생략)</p> <p>③-⑥ (생략)</p> <p>제32조(의안의 이송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도지사</u>는 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|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휴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도지사나 교육감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제21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-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도지사나 교육감</u>-----<br/>-----</p> <p>9.-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(의안의 이송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나 교육감</u>은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
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-③ (생략)

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

제73조(도지사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,

제68조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,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-③ (현행과 같음)

제6장 도지사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

제73조(도지사·교육감 등의 출석요구) ① -----도지사·교육감이나 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도지사·교육감이나 -----  
-----

③ -----  
-----도지사·교육감이나 -----

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5조(도지사 등의 발언)-----

-----  
-----

-----도지사 · 교육감  
이 -----

-----  
-----.

④ 도지사 · 교육감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73조(도지사 · 교육감 등의 발언)--

-----  
-----.

# 관계 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